

개식용 종식 입법 국회토론회

개식용 금지를 위한 선결 입법과제 - 현황과 전망

이제는 개식용 종식으로



Ka
(사) 동물권행동

일시

7월 11일(수)
오후 2시~5시

장소

국회 도서관
강당 (B105호)

주관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권을 연구하는
변호사단체 PNR

주최

국회의원 이상돈,
국회의원 표창원

KaRa

(사) 동물권행동카라

KaRa

(사) 동물권행동카라

개식용 종식 입법 국회토론회
개식용 금지를 위한 선결 입법과제 - 현황과 전망

이제는 개식용 종식으로

KaRa

(사) 동물권행동카라

일시: 2018년 7월 11일(수) 14:00~17:00

장소: 국회 도서관 강당(B105호)

주관: 동물권행동 카라 · 동물권을연구하는변호사단체 PNR

주최: 국회의원 이상돈, 국회의원 표창원

KaRa

(사) 동물권행동카라

프로그램 / 목차

인 사 말		
이상돈 국회의원		7p
표창원 국회의원		11p
발 제		
한국 반려동물의 무덤, 개식용의 종식 필요성과 실현 로드맵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상임이사	17p
축산법 개정안의 의미와 동물권 확장 전망	서국화 동물권을연구하는변호사단체 PNR 공동대표	33p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의미와 개식용 금지 입법	박주연 동물권을연구하는변호사단체 PNR 공동대표	41p
토 론	좌장 임순례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	53p
김동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장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준욱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과장 최재홍 법무법인 자연 변호사 이해원 잘키움행동치료동물병원 원장 박종원 부경대 법학과 교수 박운선 동물보호단체 행강 대표		
질 의 응 답		

KaRa

(사) 동물권행동카라

개식용 종식 입법 국회토론회
인 사 말

이상돈 국회의원

K a R a

(사) 동물권행동카라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상돈 위원입니다.

개식용 종식 입법 국회토론회 「이제는 개식용 종식으로」 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님과 함께 오늘 토론회를 개최하여 무척 기쁩니다. 아울러 자리를 마련하는 데 힘써주신 동물권행동단체 '카라', 동물권을 연구하는 변호사단체 'PNR' 관계자 분들을 비롯한 여러 전문가·토론자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국내 반려동물 인구가 천만을 넘어서고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아졌습지만 풀어야 할 난제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개식용'문제야말로 이 시대에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개식용'문제는 더 이상 '문화'이니 '전통 식습관'이니 하는 말로 넘길 수 없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개식용'과 '개농장'은 기존 법의 모순 속에서 그 추한 모습을 유지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러한 기존 법률의 모순을 해소해야 하겠습니다.

지난 5월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축산법 개정안은 가축의 정의에서 개를 명시적으로 제외하여 공장식 개농장에 종지부를 찍고자 합니다. 표창원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과 함께 하루 속히 국회를 통과한다면 개식용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동물복지도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개식용' 문제에 대해 많은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참여자 수가 15만 명을 훌쩍 넘었고, 지난 4월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식용목적 개 도살이 동물보호법(제8조1항4호)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로서 동물학대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개식용'을 단순히 인간의 다양한 식습관으로 이해했던 과거의 인식과는 확연히 다른 것으로, 비로소 지구적 차원의 보편적 문화 기준을 함께 공유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현행법의 한계와 개의 산업적 이용 실태를 점검하고, 개식용 종식에 앞서 해결해야 할 입법과제를 논의해서 전향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모쪼록 ‘개식용’에 관한 지금의 국민적 인식이 관련 법제도를 변화시켜 이 오래되고 해묵은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7월 11일
국회의원 이상돈

K a R a
(사) 동물권행동카라

KaRa

(사) 동물권행동카라

개식용 종식 입법 국회토론회
인 사 말

표창원 국회의원



KaRa
(사) 동물권행동카라

인사말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표창원입니다. “개식용 종식 입법 국회 토론회”에 관심 가져 주시고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반려동물’은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며 안정감과 친밀감을 주는 가족과 같은 존재’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2018년 3월에 발표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2017,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는 28.1%로 4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동물은 ‘개(662만)와 고양이(232만)’로 약 900만 마리에 달하고 있습니다.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려동물 가구 수가 보여주는 유의미한 변화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개와 고양이를 ‘반려가족’의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점점 더 ‘보편적인 상식’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 사회에서 ‘개식용’은 오랜 시간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습니다. 개는 ‘축산법’ 상에서는 가축이지만 ‘축산물위생관리법’에는 가축으로 명시되지 않은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개’를 대량사육하고 산업적으로 이용할 수는 있으나 사육 및 도축의 과정에서의 위생을 관리하고 판매하는 것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함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목을 매는 등의 잔인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는 행위, 다른 동물이 지켜보는 앞에서 동물을 죽임에 이르는 행위”등을 금지하며, 동물의 도살 방법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항 역시 가축으로 규정되지 않은 동물의 도축과 학대를 방지하거나 처벌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불법도 합법도 아닌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살상을 규제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저는 ‘생명존중의 원칙’을 지키고, ‘개·고양이’ 등 가축으로 규정하지 않은 동물에 대한 무분별한 살상 행위를 종식하기 위해 ‘임의도살금지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동물보호법의 학대금지 조항에 명시된 선언적인 수준을 벗어나 실존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 전문가들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한 법안입니다. ‘임의도살금지법’이 통과된다면 정해진 규정을 벗어나 행해지는 동물에 대한 도살 행위를 근절할 수 있습니다. 법안이 발의된 이후 일부에서는 ‘소, 돼지, 닭’ 등의 다른 동물이 처한 현실은 외면한 채 오직 개와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만을 위한 법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냐는 의견과 여러 우려의 말씀들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동물에 대한 임의도살을 금지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 인간의 생활공간 안에서 ‘가족’의 의미로 자리 잡은 동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 한다면 상대적으로 우리 생활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식용’을 목적으로 사육되는 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는 더욱 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남게 됩니다. ‘개와 고양이’ 등에 대한 임의도살을 금지하는 것은 오직 ‘반려동물’을 특권적 위치로 끌어올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동물들에게 적용되는 ‘생명 존중의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둘째. ‘반려견’과 ‘식육견’은 나눌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개의 종(種)에 따른 생김새와 크기로 나눈 임의적인 구분일 뿐이며 ‘모든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인종에 따라 ‘시민’과 ‘시민이 아닌’ 사람을 나누고,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차별하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민사회의 발전과 인권의 향상이 ‘모든 사람’을 ‘행복할 권리’가 있는 주체로 규정하였듯이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모든 동물들에 대한 비인도적인 도살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동물학대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것’은 결국 ‘사람을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듯이 동물학대는 사람에 대한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 연방수사국 FBI(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는 2016년부터 동물학대를 ‘반사회범죄’로 분류해 관련 데이터를 축적하고 대중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는 단지 ‘동물에 대한 범죄’가 아닌 또 다른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인권과 동물권은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토론회는 매우 뜻 깊고 중요합니다. ‘임의도살금지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하는 이상돈 의원실과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권연구단체 PNR의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점검하고 보다 생산적인 논의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이곳에 모여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행복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7월 11일

국회의원 표창원

KaRa

(사) 동물권행동카라

발 제

K a R a

(사) 동물권행동카라

한국 반려동물의 무덤,
개식용의 종식 필요성과 실현 로드맵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상임이사

축산법 개정안의 의미와 동물권 확장 전망

서국화
동물권을 연구하는 변호사단체
PNR 공동대표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의미와 개식용 금지 입법

박주연
동물권을 연구하는 변호사단체
PNR 공동대표

KaRa

(사) 동물권행동카라

발제 1

한국 반려동물의 무덤, 개식용의 종식 필요성과 실현 로드맵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상임이사)

KaRa

(사)동물권행동카라



KaRa

(사) 동물권행동카라

발제 요약

한국 반려동물의 무덤, 개식용의 종식 필요성과 실현 로드맵

동물권행동 카라 상임이사 전 진 경

- 농림축산식품부가 낳고 환경부가 키운 대한민국 개식용 문제, 해결의 열쇠를 찾아라 -

1978년 정부는 축산물위생관리법(구: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개’를 제외했다. 1970년대 우리 국민들의 연간 육류 소비량은 연 5Kg 정도로 현 소비량(2016년 인당 연 51.3Kg)의 약 1/10 수준이었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정부는 육류의 생산량을 높이기 위한 축산 산업화를 개시했으며 1990년대 후반 ‘현대화’를 명목으로 공장식축산이 가속화되기 시작했다. 전 세계적으로 개의 식육으로의 산업화 사례와 대량 사육의 예는 전혀 없다. 우리나라도 가축의 사육·도살·처리와 축산물의 가공·유통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스스로 ‘개’를 제외한 것이다.

얼마 후 88년 올림픽을 계기로 한국에도 동물보호법이 제정된다. 목을 매달아 도살, 공개된 장소에서 도살, 동종의 동물이 보는 앞에서 도살하는 행위를 주요 ‘동물학대’로 최고 처벌 형량을 부과했다. 이 조문은 당시 유행하던 개 도살에 수반되던 ‘학대’ 행위를 ‘그대로 법 조문화’한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한국의 ‘잔인한 개 도살’을 처벌, 제어하는 것이 주 목표였다.

정규 육류로의 산업 육성 포기가 1970년대, 동물보호법으로 도살행위를 처벌하겠다고 국가가 공표한 것이 1990년대 초반이다. 그러나 국가는 무책임했다. 도살과 유통의 근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개의 지육’은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롭게 유통, 소비되었다. 이 과정에서 ‘식용’목적의 마구잡이 개사육과 임의 도살 행위 등 개식용이 야기하는 동물학대는 전혀 제어되지 않았다. 오히려 법적 공백 영역으로 나간 개농장은 아무 기준 없이 자유롭게 영업을 이어갔다. 사육, 도살 등 기준이 있을 수 없으니 모든 게 가능했다. 개농장은 난립되었고, 도살자들은 동물보호법을 피해 전기도살 방법을 고안해냈다.

난립되는 개농장의 환경오염 문제가 대두되자 환경부는 환경오염을 막겠다며 2007년 ‘개’를 가축분뇨법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필요 축종에 추가했다. 결과는 참담했다. 가축분뇨법은 오히려 개를 합법적으로 대량 사육할 수 있는 시설의 기준을 제공하며 대규모 개농장이 생겨나게 했다. 환경오염을 막거나 개농장의 난립을 제어하는 역할도 하지 못했다. 오늘날 난립한 불법 개농장들이 그 증거다. 개농장의 확산 추세에 편승해 무허가 개농장도 더욱 늘어났다. 늘어난 개농장은 이익극대화를 위해 점점 규모화 했다. 1천 마리 이상 사육 규모의 개농장들이 생겨났고 급기야 6,000마리, 1만 마리를 키우는 농장도 출현했다. 규모화한 개농장을 떠받치는 자원으로서는 음식쓰레기와 축산폐기물이 조직적으로 개농장으로 공급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오늘날 ‘동물에게 먹이는 용도’로 음식쓰레기를 수거하는 업자의 90% 이상이 개농장주이다. 음식쓰레기를 치울 곳이 없었던 환경부, 그리고 축산폐기물을 손쉽게 처리하려는 식약처는 ‘개’들을 폐기물 처리기로 이용했다. 동물이 폐기물 처리 도구로 모진 학대를 받을 때 이들을 보호해야 할 농식품부는 개식용에 대한 ‘국민적 합의’ 운운하며 동물학대를 방치했다.

개식용 산업은 특수성을 가진다. 개들은 사람을 따르는 특질이 있어 누구나 키우기 쉽다. 유기견이나 단돈 몇 만원에 강아지를 매입하거나 못 키운다며 거저 주는 개들을 이용해 손쉽게 개농장을 시작할 수 있다. 음식쓰레기를 먹이기 때문에 별도의 사료 값도 들지 않으며, 산발적 도살이나 판매로 처벌받지도 않는다. 개농장을 매개로 잔인한 투견이 성행하며 어린 암컷 개들의 난자를 이용해 비윤리적 복제연구도 이뤄진다.

개식용은 소음이나 악취 같은 직접적 민원과 불화를 유발한다. 인간과 개의 오랜 유대가 부정되고, 국가, 사회, 반려동물문화, 동물복지, 환경 전반에서 혹독한 수준의 대가를 요구한다. 반려동물 식용 국가라는 오명, 전반적인 동물복지 인식의 저해, 반려동물 문화 수준의 저하, 극단적인 동물학대 행위의 만연, 폐기물 급여로 인한 환경위해와 개의 집단 사육이 가져올 가공할 인수공통 전염병 위험 등이다. 일부의 취식자, 식용개 농장주, 도살자, 값싼 음식쓰레기 처리 비용이라는 금전적·단편적 이익으로 상쇄 불가능한 본질적 가치와 공공 안전이 훼손되고 있는 것이다.

2018년 3월 24일을 기점으로 사육면적 200m² 이상 대형 개농장 중 불법시설은 무허가 축사 양성화 후속 조치에 따라 폐쇄된다. 음식쓰레기를 개농장으로 마구 반입하는 행위를 제어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도 국회 계류 중이다. 그러나 2017년 현재 가축분뇨법에 따른 시설이 ‘신고’된 개농장만 2,700여 곳에 이른다. 이들은 무허가 축사 폐쇄 조치와 무관하다. 실제로 현재 전업 개농장의 총수는 약 3,500개, 부업 개농장까지 합하면 개농장 총수는 약 6,000여 곳 정도로 파악된다.

3500여 전업 농장 중 약 70%에 이르는 소위 '신고'된 개농장들은 세를 결집하여 생존권 명목으로 이익을 방어하며 버틸 것으로 예상된다.

동물권 행동 카라는 2014년부터 전국 개농장 필드 조사를 통해 부익부 빈익빈으로 규모화 되어가는 한국 개농장 문제를 절박한 심정으로 사회에 알렸다. 2016년에는 국제컨퍼런스를 통해 한국이 세계 유일의 대규모 식용개 사육 농장 운영 국가임을 전 세계에 알려 공론화한 한편 축산법의 개정과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한 임의도살 금지를 제안한 바 있다. 2017년에는 개농장 분포와 음식쓰레기 급여 실태 파악을 통해 식용개 산업의 운영 메커니즘을 알리고 추가 난립과 불법 행위를 제어할 단서를 제공하며 환경부와 농식품부가 엄정한 법집행으로 역할을 다 해 줄 것을 호소했다.

2016년 개식용종식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에서 제안했던 동물보호법과 축산법의 개정안이 꿈만 같이 거의 동시에 발의되었다. 동물권 행동 카라는 <이제는 개식용종식으로> 국회 입법 토론회에서 개식용 종식을 위한 실현 로드맵을 본격적으로 우리 사회에 도입하고자 한다. 더 늦기 전에 개식용 종식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한다.

개식용업자들도 이 산업이 지속가능하지 않음을 안다. 재래 개시장 폐쇄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요구도 점점 거세지고 있고 소비는 급격히 퇴축되고 있다. '바로 지금'이 국제적 동물학대 이슈 한국 개식용 문제 해결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적기이다. 현행법을 위반하며 영위해 온 개식용 산업을 철저한 법집행을 통해 제어하여 규모를 축소하면서, 다른 한편 출구 전략으로서 개농장 규모별 전업지원, 재래 개시장 전업을 병행한다면 상당히 빠른 시일 내 개식용 종식은 가능하다. 임의도살을 허용하는 동물보호법의 맹점을 보완하여 동물보호법 제정의 목적을 달성하고, 대규모 개사육의 근거가 되어 온 축산법의 개정을 통해 1,000만 국민들이 '반려동물로서의 개'와 살아가는 사회변화를 반영함으로써 반려동물문화의 정상화를 꾀하는 일이 그 서막을 올릴 것이다.

농식품부가 낳고 환경부가 키운 한국 개식용 문제. 정부는 향후 최장 10년 안에 우리 국민이 전 세계 유일 대규모 개농장 운영 국가, 임의적인 개도살을 허용하는 국가의 국민이라는 치욕에서 완전히 벗어나도록 해야 하며, 합리적이고 치밀한 개농장 전업지원 등 출구 전략의 제시로 갈등을 치유하고 모두가 화합하는 발전적 정책을 국민과 함께 고민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국적 개농장 및 개식용 실태조사에 즉각 나서야한다.

한국 반려동물의 무덤, 개식용의 종식 필요성과 실현 로드맵

KaRa
(사) 동물권행동카라

2018. 7. 11

동물권행동 카라 상임이사 | 전진경



(사) 동물권행동 카라

KaRa
(사) 동물권행동카라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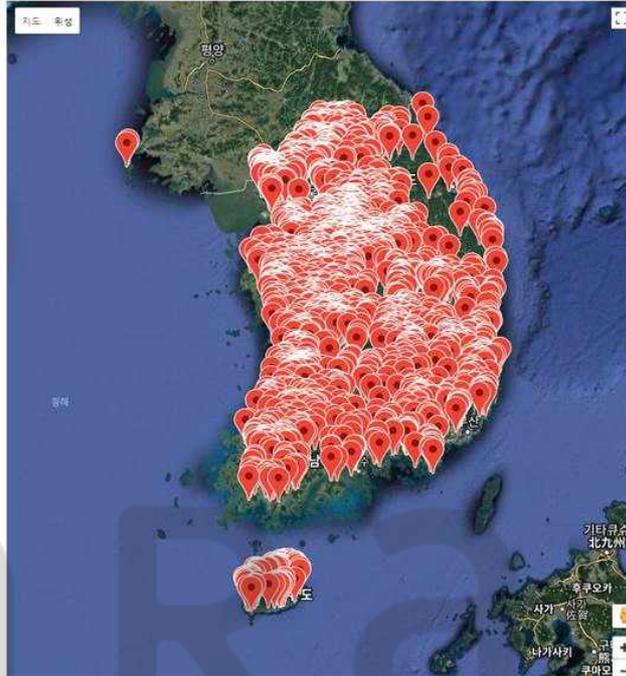
- 01 / 세계 유일 한국의 개농장
- 02 / 개사육과 개도살의 '현황'
- 03 / 개식용의 '비용'
- 04 / 개식용 종식의 필요성
- 05 / 개식용 종식 실현 로드맵

1 | 세계유일 한국의 개농장

KaRa
(사) 동물권행동카라

'식용 개농장' 최소 2,862개
 78만 1,740 마리 사육
 500마리 이상 사육 기업형 개농장 422개
 지자체 1년 평균 3.64개 개사육시설 점검
 농장당 평균 사육 두수 273마리(농식품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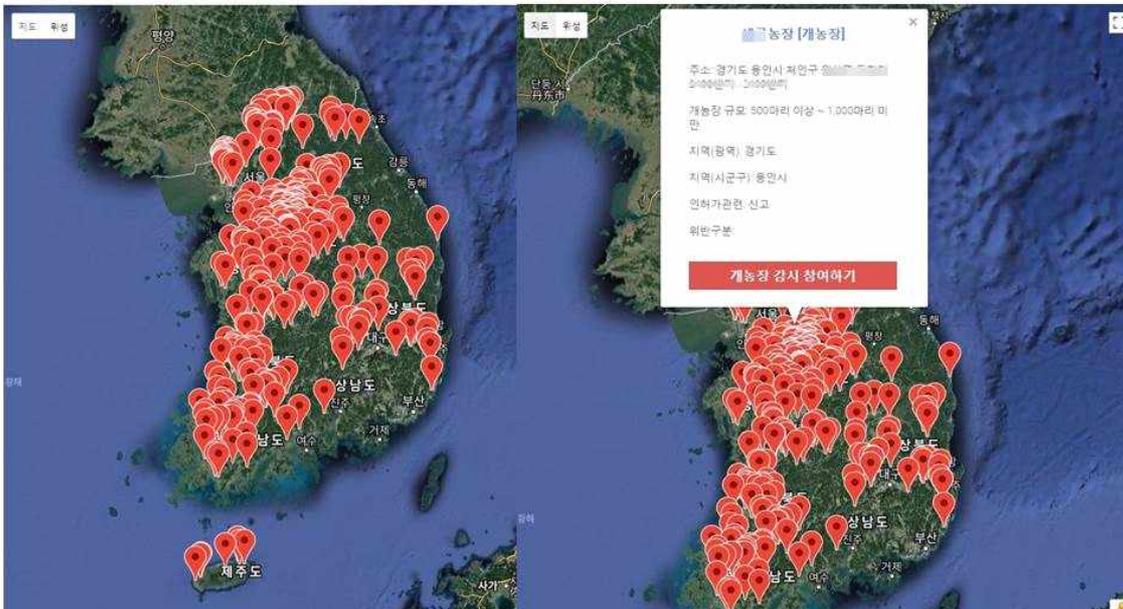
- 1천마리 이상 사육하는 공장식 개농장
- 충청북도 21개
 - 경기도 18개
 - 전라북도 11개
 - 충청남도 10개



1 | 세계유일 한국의 개농장

KaRa
(사) 동물권행동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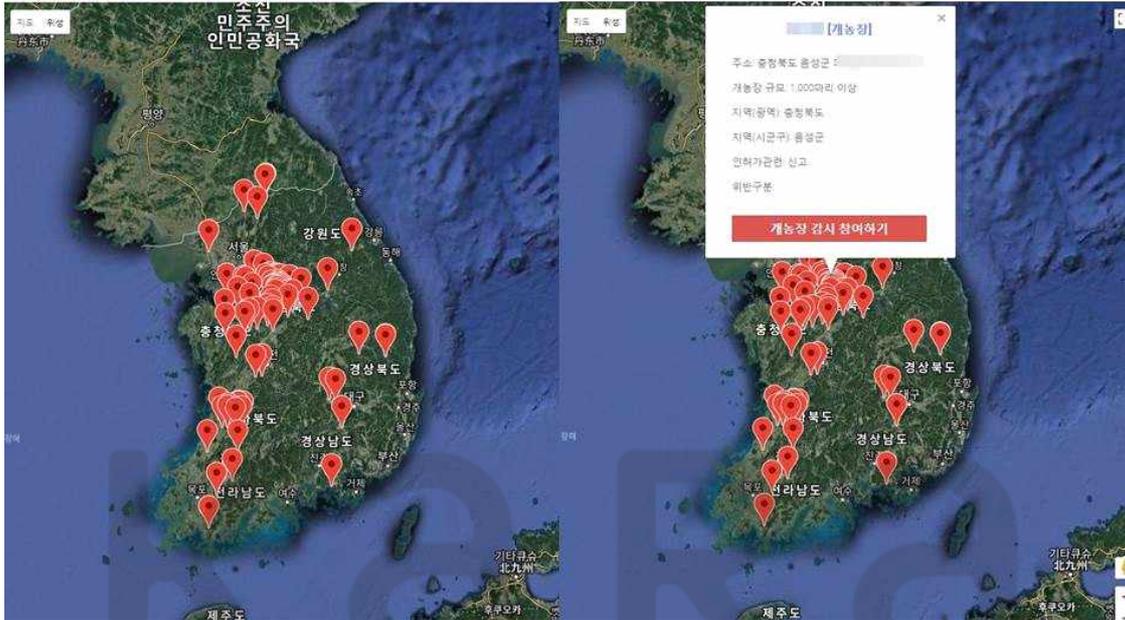
500마리~1,000마리 사육 농장



1 | 세계유일 한국의 개농장

KaRa
(사) 동물권행동카라

1,000마리아상



2 | 개사육과 개도살의 '현황'

KaRa
(사) 동물권행동카라

공장식 밀집 사육과 이익 극대화를 위한 규모화 (최대 1만 마리 이상 사육)



2 | 개사육과 개도살의 '현황'

KaRa
(사) 동물권행동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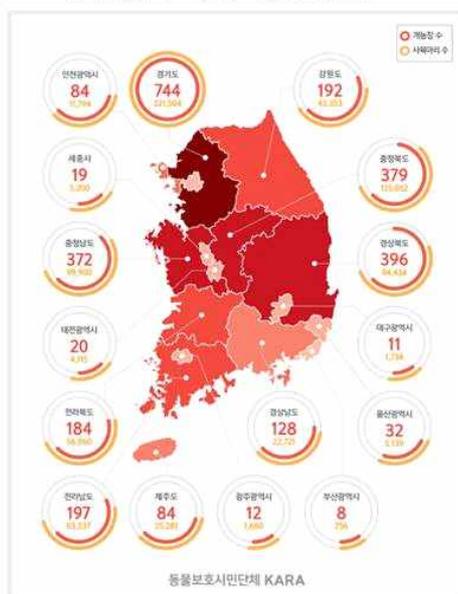
개농장을 지탱하는 2대 자원 - 음식폐기물과 축산폐기물



2 | 개사육과 개도살의 '현황'

KaRa
(사) 동물권행동카라

세계 유일 '식용' 개농장 분포도



반려동물 '개'를 폐기물 쓰레기통으로 사용한 환경부



2 | 개사육과 개도살의 '현황'

KaRa
(사) 동물권행동카라

잔인한 임의도살과 무규범 불법적 유통



3 | 개식용의 '비용'

KaRa
(사) 동물권행동카라

동물보호법의 무력화 및 일관성 와해 : 제 8조 1항 '임의 도살' 허용하는 치명적 문제

등록제 / 소위 '맹견' 관리 / 생산업 허가제와 이중 기준



개 전기도살 무죄판결 파기를 위한 항소심 선고공판 시민참여 요청

대한민국 국민들의 법 상식에 비추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인 '인천지법 전기개도살 무죄판결' 2심 선고기일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감사의 추가 입증이나 의견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된 이번 항소심 재판에 큰 우려를 표하며 목요일 오전으로 예정된 선고공판에 여러분들께서 직접 방청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저희들은 동물들에게 법이 보장하는 정의 실현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9월 28일 (목) 오전 11시 서울고등법원 서관 302호 선고공판



KaRa 동물권행동카라 동물자유연대 동물유관단체협의회

3 | 개식용의 '비용'

KaRa
(사)동물권행동카라

폐기물관리법 악용 및 가축전염병 예방 저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의 적정한 관리체계 교란 / 전염병 관리 체계 와해 및 인수공통 전염병 등 고도의 위험 부과



www.shutterstock.com - 575005035

뉴스 정확도 · 최신



개에서 시 황체 발견 '조류독감이 포유류에게도?' 국내 첫 사례

2014.03.14 SBS funE 다음뉴스

시가 발생한 충남 천안의 한 농장에서 기르던 '개'에서 시 황체가 발견돼 보건당국이...졌다. 당국은 국내에서 시가 조류에서 포유류인 개로 이중 간 감염되는 것을 보여준...



조류인플루엔자, 포유류 첫 감염, 사람도 옮을까? 2014.03.17 마니투데이 다음뉴스

충남 천안의 한 양계농장에서 키우던 개 3마리 중 1마리로부터 H5형 황체 양성반응이...었다. 국내에서 시가 조류가 아닌 포유류(개)에게 감염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조류독감으로 폐사한 닭 먹은' 개 12마리 감염 2014.03.24 위키트리

개 150마리를 사육하는 농장에서 11마리, 천안시 풍세면 가솔리 닭 사육농가에서 1마리...충청리 농장에서 기르던 개에서 시 황체가 발견된 것까지 포함하면 모두 13마리...



개 시 감염 '새에서 개로' 다른 종으로 감염되는 첫 사례 추적

2014.03.14 SBS funE 다음뉴스

지난 천안 가금류 사육단지 내 이 모 씨 농장에서 키우는 개 3마리에 대한 항원 검사 결과 1마리에서 H5형 황체 양성 반응이 나왔다. 황체 양성반응이란 H5형 항원에 감염된...



개에서 시 바이러스 검출, 사람도 감염될까? 2015.02.02 MBN 다음뉴스

조류 독감으로 알려진 시가 개에게도 검출됐습니다. 2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감염되는 사례는 지난해 3월 충남 천안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번 감염...

↳ 개에서 시 바이러스 검출, 예방차원에서 모두 살처... 2015.02.02 MBN 다음뉴스

3 | 개식용의 '비용'

KaRa
(사)동물권행동카라

- 사회적 갈등 /
- 전통가치 훼손 /
- 반려동물 문화 발전 저해 /
- 정신적 고통 /



3 | 개식용의 ‘비용’

KaRa
(사) 동물권행동카라

투견/

인명 및 안전 사고/

부도덕한 난자채취와 복제연구/

각종동물학대(자가진료, 운송, 행동육구 박탈, 잔반 학대)



3 | 개식용의 ‘비용’

KaRa
(사) 동물권행동카라

‘개고기’의 임의적 유통이 부과하는 예측 불가능한 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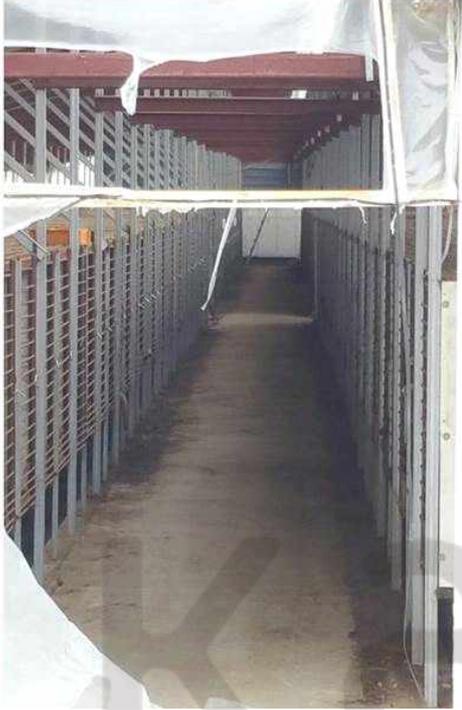
식품 원료로서의 ‘개’에 대한 입장 및 관리 부재로 인한 국민 건강 위험/

축산폐기물의 부적절한 관리가 축산물위생관리 체계를 와해하며 부과하는 부담과 위험/



4 | 개식용 종식의 필요성

KaRa
(사) 동물권행동카라



동물보호 복지와 관련한 법적 미비점 보완

지속 가능한 축산과 위험 관리 지향

폐기물의 적절한 관리로 환경 위해 방지

비정상적인 반려동물문화의 '정상화'

4 | 개식용 종식의 필요성

KaRa
(사) 동물권행동카라



축산법 개정 < -> 대규모 사육 근거 제거

동물보호법 개정 < -> 임의도살 금지

폐기물관리법 개정 < -> 부정합 자원유입 차단

→→ 법적 완결성 부여로 비정상적 '정상화'

5 | 개식용 종식 실현 로드맵

KaRa
(사) 동물권행동카라



실태조사 최 우선 실시

개식용 종식 필요성 공론화

폐기물관리법, 축산법, 동물보호법 개정과 이에 따른 엄정한 집행

전업지원 등 출구전략을 포함한 '개식용 종식 로드맵' 도출과 합의

5 | 개식용 종식 실현 로드맵

KaRa
(사) 동물권행동카라



기본원칙

우리나라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마스터 플랜 우선 수립

개식용 산업의 본질에 따른 불법 행위 적발과 시정 병행

-농식품부/ 환경부/ 식약처 등 정부 각 부처 공동 책임 인식 필요

5 | 개식용 종식 실현 로드맵

KaRa
(사) 동물권행동카라

	구분 (규모)	대응방안
불법	영세 불법 소규모 농가	대부분 다른 농업과 병행, 가축분뇨법에 따른 폐쇄명령 (2024년부터), 조기 자연소멸 또는 행정 지원으로 조기 폐업지원
	불법 소규모 농가	가축분뇨법에 따른 폐쇄명령(2019~2024), 전· 폐업 행정 지도
가축분뇨처리 시설신고농가(총 2800여곳)	200마리 미만 사육 농가	규제 강화와 소비 축소 운동으로 영업 축소 및 합리적 전· 폐업 지원
	200~1000마리	규제 강화와 소비 축소 운동으로 영업 축소 후 단계적 폐지 - 합리적 전· 폐업 지원
	1,000마리 이상	규제 강화와 소비 축소 운동으로 영업 축소 후 단계적 폐지 - 합리적 전· 폐업 지원 + 폐업시까지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급여 준수 유도 및 동물보호감시원 상시 동물복지 점검



KaRa

(사) 동물권행동카라

축산법 개정안의 의미와 동물권 확장 전망

서국화 (동물권을 연구하는 변호사단체 PNR 공동대표)

K a R a

(사) 동물권행동카라



KaRa

(사) 동물권행동카라

축산법 개정안의 의미와 동물권 확장 전망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공동대표
서국화 변호사

1. 제안의 배경 - 식육사용을 위한 개 도살이 가능한 현행제도

가. 가축의 도살 등은 축산물위생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축산물위생관리법은 해당 법령의 적용을 받는 ‘가축’의 정의에서 ‘개’를 규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에 대한 도살은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이유 - 규율대상에 ‘개’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 - 로 ‘가축’의 도살이 ‘허가받은 작업장’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처벌하는 규정 역시 ‘개’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 그 결과 뻔히 ‘개’의 지육이 시장에 유통되고 있음에도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 및 공중위생을 위한다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은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 단지,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개를 도살한 경우, 그 상황을 포착하여 증거를 남겼을 경우에만 겨우 동물학대로 처벌되는데 불과합니다. 그러나 동물보호법 위반에 따른 처벌 역시 최근 인천지방법원의 ‘전기도살 무죄’ 판결에 비추어 볼 때 실효적인 제재수단이 되지 못하며,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되지 못하고 유지될 경우 우리나라의 개 도살은 법률의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제재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라. 동물보호법과 축산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식육목적의 개도살을 실효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관련 법령의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고, 축산법과 동물보호법의 개정안이 발의되어 그 중 축산법 개정안의 의미에 대하여 정리합니다.

2. 이상돈 의원 대표발의 ‘축산법 개정안’

가.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p>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가축”이란 사육하는 <u>소·말·면양·염소</u> (유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u>돼지·사슴·닭·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u>, 그 밖에 <u>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動物)</u> 등을 말한다.</p> <p><신 설></p> <p><신 설></p> <p>1의2. ~ 10. (생 략)</p>	<p>제2조(정의) _____</p> <p>1. _____ <u>다음 각 목의 동물(物)</u>을 말한다.</p> <p>가. <u>소·말·면양·염소(유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돼지·사슴·닭·오리·거·칠면조·메추리·타조·꿩</u></p> <p>나. <u>개를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 동물</u></p> <p>1의2. ~ 10. (현행과 같음)</p>

나. 현행 축산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령은 아래와 같이 ‘개’를 가축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축산법 시행규칙

제2조(가축의 종류)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노새·당나귀·토끼 및 개
2. 삭제 <2013.4.11.>
3. 꿀벌
4. 그 밖에 사육이 가능하며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동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

3. 축산법 개정의 의미

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1) 축산물위생관리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의 사육·도살·처리와 축산물의 가공·유통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가축의 개량·증식,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 및 유통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축산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며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축산법과는 구별됩니다. 즉, 축산법은 가축의 사육, 거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법률이고, 축산물위생관리법은 상품으로서의 축산물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법률이라 할 것입니다.

(2) ‘개’는 축산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가축’에는 해당하나, 축산물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가축’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개는 ‘가축의 도살’을 규율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도살을 할 수 없어야 함이 마땅해 보이고, 이는 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동물보호법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이와 관련한 동물보호법 개정 관련-박주연 변호사의 발제 내용-).

(3) 즉,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가축의 도살은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하는데(제7조), ‘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같은 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작업장’이 있을 수 없고, 그렇다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개도살은 모두 ‘허가 받은 작업장’ 외의 도살이므로 이에 대한 벌칙규정인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해보입니다.

(4) 위와 같은 논리의 흐름이라면 개식육 즉, 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개도살은 이미 금지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이유는 ‘허가 받은 작업장’에서 도살해야 한다는 제7조 역시 ‘축산물위생관리법’이기에 위 법상 가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축산물위생관리법 자체가 개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때문입니다.

(5) 물론 이러한 해석이 옳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개별법에서 규율대상과 그에 대한 행위제한을 규정하고 있을 때, 규율대상에서 제외된 개체가 있는 경우 ① 그 개체에 대한 행위는 아무런 행위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해석할지, ② 규율대상 자체가 되지 않았으니 행위자체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는지(해당 법이 규율하고 있는 행위제한에 저촉될 경우 위법이라고 보아야 하는지)여부는 법률 해석의 문제인데, 이때 후자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행위제한을 둔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역시 위와 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9. 8. 19. 선고 98두1857 전원합의체판결).

(6) 그러나 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가축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 받은 작업장’에서 도살해야 한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다거나, 벌칙 규정인 제45조 제1항 제1호 규정도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처리한 자’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가축’에 ‘개’가 포함되지 않는 이상 임의의 장소에서 개도살이 이루어져도 위 벌칙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실무입니다.

(7) 실제 개도살자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7조에 따라 고발한 사건에서 같은 이유로 불기소처분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행법령의 해석·적용은 ‘축산물의 위생적 관리’라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의 목적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므로 타당하다고 볼 수 없으나, 해석·적용방식의 개선을 기대할 수 없는 이상 입법적인 해결을 도모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나. 발의된 축산법 개정안

(1)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에 따르면, 법적 근거 없는 ‘개’의 도살을 막기위해서는 축산법 보다 축산물위생관리법을 개정(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가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모든 동물의 도살을 금지하거나 처벌규정을 개선하는 방식)하는 것이 가장 실효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2) 그러나,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가축에 해당하지 않는 ‘개’가 축산법에서는 가축에 해당하여 대량 사육·산업적 이용을 전제로 하는 즉, 대량사육은 가능하나 도살은 불가능한, 현행법상 그 지위를 알 수 없는 동물인 ‘개’를 축산법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식용”을 전제로 한 대량 사육의 법적근거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개식용 금지는 한발짝도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3) 축산법에 따라 ‘개’의 사육이 가능해지면서 그 방식은 점차 ‘공장식’이

되어가고, 육견업자들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개를 사육하여 최대한의 이익을 남기고 자 음식물쓰레기의 수거, 급여 등 동물복지를 심히 해하는 행위를 자행해 왔습니다.

(5) 따라서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의 지위를 가지고,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축산물’로 취급되지도 아니하는 ‘개’는 축산법상 가축에서 제외하여, ‘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공장식 개농장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동물학대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기대하는 효과

(1) 물론 축산법에서 ‘개’를 가축에서 제외한다고 하여 당장 대량 사육을 규제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축에서 개가 제외되면 개는 축산법상 ‘가축’과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이라는 이중적 지위에서 반려동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게 됩니다.

(2) 특히 동물보호법상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에 대해서만 동물등록의 의무를 두고 있기 때문에 개를 식용으로 대량 사육함이 허용되는 축산법 아래, 개농장주들은 반려동물 등록 의무를 면하여 왔습니다.

(3) 그러나 모든 개가 ‘반려동물’로서 지위를 가지게 되면, 모든 개는 다 등록 대상이 되고, 이는 우리나라와 달리 중국의 개농장이 “덜”산업화 될 수 있었던 이유로서 중국의 “예외없는 1 개(犬) 1 등록”제도에 비추어 보았을 때 견잡을 수 없이 공장식, 산업화 된 우리나라 개농장의 확장을 막을 수 있는 실마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4. 추후 수반되어야 할 개정

가. 축산물위생관리법 :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르는 외에는 동물의 도살·처리, 집유, 가공·포장 및 보관할 수 없고, 이러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할 필요.

나. 식품위생법 :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한 식품위생법 제44조 관련-개고기(보신탕) 판매업자를 식품위생법 제44조로 처벌하고자 하는 경우,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 규정 및 해석에 의하면 개가 같은 법상 가축

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 받은 작업장’에서 도살해야 한다는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논리와 마찬가지로, 가축이 아닌 개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검사할 방법이 없으므로 결론적으로 검사를 받지 아니한 ‘개의 지육’을 운반·보관·진열·판매하거나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는 경우임이 명백한 ‘보신탕’판매업자의 경우도 식품위생법 제97조에 따라 처벌하지 않고 있음. 일반인에게 유통되는 식품은 시민의 건강, 위생, 보건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 규정 및 식품공전의 규정 명확화할 필요.

K a R a

(사) 동물권행동카라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의미와 개식용 금지 입법

박주연 (동물권을연구하는변호사단체 PNR 공동대표)

KaRa
(사) 동물권행동카라



KaRa

(사) 동물권행동카라

발제 요약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의미와 개식용 금지 입법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공동대표
박주연 변호사

<발제 요약문>

1. 현행 동물보호법령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	제4조(학대행위의 금지) ① 법 제8조제1항·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죽이는 행위 2.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경우

2. 현실 및 문제점

현행 동물보호법령은 동물 생명 침해 행위의 '방법 내지 유형'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제1호 내지 제3호), 동물을 함부로 죽이더라도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죽이지 않는 이상 처벌하지 않음.

한편, 제4호는 동물을 죽이는 방법과 무관하게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 자체

를 처벌하지만, 하위법인 시행규칙이 법률이 위임한 ‘정당한 사유’가 아닌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를 한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시행규칙에 정한 두 가지의 제한적인 경우가 아닌 한 역시 처벌하기 어려움.

현실 - 개고기 판매를 위하여 개를 죽인 경우, 길고양이를 잡아 소위 나비탕을 해 먹는 경우 등 법이 식용으로 예정하지 않은 동물(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가축 외 동물)을 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죽인 경우는 제4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처벌대상이 되어야 함이 원칙임에도, 동물보호법은 위와 같은 문제점들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에 해당하지 않는 ‘동물살해’를 실효적으로 제재하지 못하고 있음. 오히려 ‘동물을 죽일 수 있되, 특정한 방법으로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태도를 취하여 법이 허용하는 경우 외에도 동물을 죽일 수 있다는, 동물보호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를 가져옴.

이러한 법의 태도로 인하여 동물을 생명체로서 존중하고 그 복지, 권리 침해에 신중을 기하는(배려하는) 의식 부족 - 이는 동물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 인간이 생명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하는가, 사회의 문제들과도 직결되어 있음.

특히 왜 개, 고양이 식용 금지인가? 이들 동물은 반려인구가 가장 많이 기르는 종임. 반려동물로서의 지위가 명확해지고 있고, 가장 흔히 접할 수 있는 동물인 만큼 식용을 위한 살해, 절도, 학대에도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음. 이러한 현실을 그대로 방치하면서 동물복지를 증진시키기란 어려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대하는 사회 인식 및 이를 반영한 일부 판례들 존재.

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제안 이유 및 경위

정당한 사유 없는 동물살해, 반려동물 식용 금지 및 생명 존중의식 확고화 위해서는 가장 먼저 ‘법이 허용하는 외에 동물을 죽이는 행위의 원칙적 금지’가 확립되어야. 이를 통하여 동물의 생명을 보호할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위생도 도모할 수 있음.

이에 따라,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를,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동물을 죽여서는 아니’ 되며 예외적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르는 경우거나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가 있거나,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에만 동물의 도살이 허용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함.

4. 이번 개정안의 의미 및 기대효과

열거방식(체계)의 변화, 생명존중 및 그 침해 금지를 원칙으로 천명함으로써 무분별한 도살행위를 제재하는 효과. 법이 정한 경우 등 외에는 죽이지 말라는 생명 존중 의식 고취 효과. 다만, 법률의 규정 또는 정당한 사유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도살을 허용함으로써 현실적인 필요도 고려하려고 하였음. 모호하고 제한적인 기존 법령으로 인하여 기존에 처벌되지 못하였던 동물살해를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정한 가축 외에는 식용 목적으로 도살할 수 없게 됨(가장 대표적으로 개, 고양이 등). 식육의 위생을 도모할 수 있음.

한편, 동물 도살이 가능한 예외적 사유 중 '사람의 재산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가 여전히 포함되어 있는 점은 아쉬운 점. 비록 동물을 유체물 등 재산으로 보는 것이 현행 민법의 태도라 하더라도, 동물의 생명보호 vs. 재산 보호가 동일한 가치를 지닌 법익이 될 수 있을지 의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은 생명 존중 원칙을 천명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무분별한 도살을 제재하고자 하고 있고, 기존법보다 훨씬 명확한 구성요건을 갖추게 됨으로 인하여 기존법이 처벌하지 못한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동물권행동카라

<발제문>

1.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내용

지난 6월 20일 표창원 의원 및 9명의 의원이 제안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13958호, 이하 “개정안”)은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의 체계를 완전히 바꾸어, ‘누구든지 동물을 죽여서는 아니 된다’는 동물 도살의 원칙적 금지를 규정하였다. 다만, 식용으로 길러지는 농장동물의 도살, 가축전염병 예방 또는 생태계 보호를 위한 살처분,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직접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수의학적 처치상 필요한 경우 등 현실적으로 도살이 불가피한 부분들을 예외로 두었다. 이 외에도 개정안은 위 예외에 따라 도살이 가능한 경우에는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였고, 동물학대 처벌 조항의 구성요건을 ‘동물을 죽이거나 학대한 경우’로 변경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현행	개정안
<p>3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서 신설></p> <p>1. 목을 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p> <p>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p> <p>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p> <p>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p> <p>② ~ ⑤ (생략)</p> <p>10조(동물의 도살방법) ① 모든 동물은 혐오감</p>	<p>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동물을 여서는.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축산물 위생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의 규정에 의해 동물을 도살하거나 처분하는 경우</p> <p>2.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직접적인 협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p> <p>3.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으로 인하여 부이하게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용하는 경우</p> <p>4. 수의학적 처치로서 불가피한 경우</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p>제10조(동물의 도살방법) ①</p>

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되어서는 아니 되며, 도살과정에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축산물위생관리법」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는 가스법·전살법(電殺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고통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도살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매몰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외에도 동물을 불가피하게 죽여야 하는 경우에는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법률 제15502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46조(벌칙)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하여 동물을 학대한 자

1의2. ~ 3. (생 략)

③ ~ ⑤ (생 략)

_____ 고통을 최소화
수 있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② 제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에-----

-----.

<삭 제>

법률 제15502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46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1-----추거

대한---

1의2. ~ 3.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2. 현행 동물보호법령의 문제점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제4조(학대행위의 금지) ① 법 제8조제1항·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험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p>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p>	<p>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경우</p>
--	-----------------------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는 특정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46조 제2항 제1호). 그런데 이러한 조항 체계는 동물을 죽이는 행위 자체를 금지한다기보다 동물을 어떠한 방법으로 죽이지 말라는 것에 불과하고, 그 방법 내지 유형 또한 매우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으며, ‘잔인한 방법’은 어떠한 방법을 의미하는지 모호하여 법원마다 서로 다른 해석을 낳게 하였다.

한편, 제8조 제1항 제4호는 동물을 죽이는 방법과 무관하게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지만, 하위법인 시행규칙이 법률이 위임한 ‘정당한 사유’가 아닌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를 규정함으로써, 시행규칙에 정한 두 가지의 극히 제한적인 경우가 아닌 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이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없었다.

예를 들어, 개고기 판매를 위해 개를 죽인 경우, 식용 목적은 제4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4호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된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제4호의 구성요건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시행규칙이 법률의 위임사항에 어긋나게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의 예시를 한정적으로 열거함에 따라 수사기관은 위 제4호의 적용에 소극적이었고, 실제로 제4호 위반으로 고발된 사건을 대부분 불기소 처분하였다. 최근 4월에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전기 충격한 뒤 죽인 피고인에게 이례적으로 위 제4호를 적용하여 동물보호법위반이라고 판단한 법원(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의 판결이 있었지만, 이는 약식명령 사건으로 만일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며 다투었다면 법리적으로 유죄 여부가 논란이 될 여지가 있었을 것으로 본다. 위와 같은 사유로 제4호는 시행규칙이 ‘정당한 사유’를 열거하는 식으로 개정되지 않는 한, 명시적인 적용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실무상 주로 적용되는 조항은 제1호이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작위적으로) 죽이는 경우 제3호는 적용이 없고, 많은 개농장이 비공개된 장소에서 개를 죽이기 때문에 다른 개들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지 여부를 증명할 수가 없어 제2호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개를 전기봉으로 충격한 뒤 죽이는 행위는 제1호의 ‘잔

인한 방법'에 해당한다는 것이 기존에 법원(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의 판단이었으나, 작년 인천지방법원(1심) 및 서울고등법원(2심)은 다른 피고인의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잔인한 방법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¹⁾

위 법원 판결에는 돼지, 오리 등 특정 동물 종마다 즉시 기절상태에 이르게 하고 고통을 최소화하는 전압 등을 상세히 규정한 축산물 위생관리법상의 전살법²⁾을 다른 종인 개에게 아무런 근거 없이 유추·확장 적용하여, 개에게 행해지는 전기 충격³⁾과 위 '법률'상 전살법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판단한 오류 등이 존재한다. 구체적인 문제점들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처럼 제1호의 '잔인한 방법'의 해석을 두고 법원들이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리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제1호 규정의 불명확함에 기인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는 현실을 규제하기에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단 개 뿐만 아니라, 축산물의 유통과 위생을 관리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식용으로 예정하고 있지 않은 고양이 등 많은 동물 종을 먹기 위해 함부로(법 외적으로) 죽이는 경우를 전혀 실효적으로 제재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는 동물에 대한 무분별한 생명 침해 문제 외에도 인간이 섭취하는 축산물의 위생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의 지위를 확고히 해가는 동물 종의 경우 이를 잡아먹기 위해 죽이는 것에 대하여는 감정적인 문제도 크다. 더구나 이러한 반려동물들은 그 식용 목적 도살이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있는 현실 때문에 식용 목적 도살을 위한 절취, 학대 등 범죄에도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현실을 그대로 방치하면서 동물복지를 증진시키기란 어려운 것이다.

나아가 상기 언급하였듯이 현행법은 '동물을 죽일 수 있되, 특정한 방법으로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태도를 취하여 법이 허용하는 경우 외에도 동물을 죽일 수 있다는, 동물보호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법의 태도는 인간중심적 관점을 탈피하지 못한 채, 생명을 존중하고 그 침해를 최소화함으로써 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3. 개정안의 제안 의미·효과

위와 같은 현실과 법적 문제점 속에서 이번 개정안과 같은 내용이 제안되었다. '누구든지 동물을 죽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생명 침해금지 자체를 원칙으로 천명하였다. 다만 축산물 위생관리법이나 가축전염병예방방법 등 법률에 의하는 경우,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로 함으로써,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게 하였다.

이러한 조문 체계는 생명 존중이라는 핵심적 가치에 더욱 부합하는 것이며, 반려동물의 식용 도살 포함, 각종 정당한 사유 없는 동물 살해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하여 동물의 생명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식육의 위생과 국민의 건강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며, ‘법이 허용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있는 경우’ 외에는 생명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의식이 좀 더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개정안은 법적 명확성·안정성 측면에서도 현행법보다 바람직하다. 현행법은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가 무엇인지 법 해석기관도 서로 다른 결론에 이를 정도로 명확하지 못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 조항은 그 적용 여부가 불투명하다. 반면, 개정안은 예외에 해당하는 비교적 명확한 사유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는 금지됨을 알 수 있다. 현행법처럼 어떠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지 말라는 열거형태는 ‘동물을 죽이는 행위’와 같은 명확한 내용이 아닌, ‘동물학대’와 같이 구체화가 필요한 개념에 접합되어야 더욱 알맞다고 본다.

한편, 동물 도살이 가능한 예외적 사유 중 ‘사람의 재산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가 여전히 포함되어 있는 점은 아쉬운 점이다. 비록 동물을 유체물 등 재산으로 보는 것이 현행 민법의 태도라 하더라도, 동물의 생명보호와 재산 보호를 비교할 때, 서로 동일한 가치를 지닌 법익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최근 국내에서도 반려동물을 잃은 경우 물건을 잃은 경우와는 달리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례도 나타나며, 지난 5월 뉴욕 법원에서는 Steven M. Wise 변호사가 신청한 인신보호영장청구사건에서 “침팬지의 자유권은 심오하나 무시할 수 없는 문제이며, 침팬지가 단순히 ‘물건’이 아니라는 사실은 명백하다”고 판시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아쉬운 점은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생명 존중 원칙을 천명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무분별한 도살을 제재하고자 하고 있고, 현행법보다 훨씬 명확한 구성요건을 갖추게 됨으로 인하여 현행법이 처벌하지 못한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추가적으로 필요한 입법 사항

개정안 제8조 제1항은 동물을 ‘죽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현행법 제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즉 학대 등 행위에 대한

고의만 있을 뿐 살해에는 고의가 없었으나 결과적으로 죽음에 이른 경우(이른바 결과적 가중범)를 처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벌칙조항(제46조)에 동물을 학대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예: 제8조 제2항 각 호를 위반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행법 제8조 제1항 제3호는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즉 부작위도 처벌하는데 반해, 개정안은 동물을 ‘죽이는’ 작위 행위만을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소유자등이 자신이 보호하는 동물을 적정하게 돌보지 않음으로 인하여 동물을 죽게 하는 행위 또한 추가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예: 제46조 제1의2호 신설, ‘제7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소유자등’).

아울러 제8조 제2항의 학대행위가 지나치게 한정된 유형만을 열거하고 있고, 사료나 물을 주지 않는 부작위로 인하여 동물이 죽음의 ‘위기’에 있는 경우를 규정하지 않아, 현재 행해지고 있는 학대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제2항의 학대행위는 향후 더욱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열거·체계화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개정안 중 벌칙 조항은 ‘죽이거나 학대한 자’를 규정하여 현행법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나, 차후에는 동물을 죽인 경우가 동물을 학대한 경우보다 더 중하게 처벌되는 것으로 개정하여, 침해된 법익과 처벌 형량 간 형평을 기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5. 결어

동물도 생명체로서 존중받아야 하고 이들의 권리는 가급적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 이는 동물보호법이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인간과 떼어낼 수 없는 동물이 어떻게 서로 공존할 것인지, 생명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할 것인지의 중대한 문제와 직결된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생명을 무분별하게 침해하는 행위가 줄어들 수 있기를 바란다.

“어딘가에 있는 부정을 방치하면, 어느 곳에서나 존재하는 정의가 위협받게 된다.
(Injustice anywhere is a threat to justice everywhere)” - 마틴 루터 킹

KaRa

(사) 동물권행동카라

-
- 1)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 2)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도축하는 경우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정하여 고시한 ‘동물도축세부규정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6-77호)’에 따르면, 진살법이 사용되는 축종은 돼지, 닭, 오리이고, 통상 2-4초간 통전함으로써 기절에 이르게 하며, 방혈은 완전히 기절한 상태의 동물에 한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위 규정 제8조, 제9조, 별표1).
 - 3) 220v의 단순한 장비인 전기봉을 개의 주둥이 등에 수차례 대어 쓰러지게 하는 것인데, 고통이 수 분간 지속되기도 하며, 완전히 무의식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방혈 등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도 한다.

토 론

좌장 : 임순례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

KaRa

(사) 동물권행동 카라

김동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장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준욱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과장

최재홍 법무법인 자연 변호사

이혜원 잘키움행동치료동물병원 원장

박종원 부경대 법학과 교수

박운선 동물보호단체 행강 대표

KaRa

(사) 동물권행동카라

토론문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장 김 동 현

□ 동물학대 행위 방지는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 중의 하나임

- 동물 보호·복지 수준 제고, 반려동물 소유자 및 일반인 인식 제고 등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사는 문화, 더 나아가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문화 조성 조성이 기본 정책 방향임
- 이러한 정책 방향 하에서 동물 유기·학대 방지, 반려동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동물실험의 윤리성 제고, 반려동물 관련 산업 관리 강화, 축산 사육환경 개선 등 굵직한 정책 과제들이 이미 제시되어 있음
- 특히, 이중에서도 동물학대는 비인도적 행위이기 때문에 이를 근절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생각됨

□ 동물학대 행위 방지를 위해서는 「동물보호법」 등 제도 개선, 교육·홍보 강화 등을 통한 국민 인식 변화, 일선 행정 인력 확보 등이 필요함

-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이번 토론회는 이 행사 자체로써 국민들에게 교육과 홍보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어 매우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됨
- 그간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 행위의 범위 확대,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져 왔으나, 많은 분들께서는 동물학대 행위 방지를 위해서는 더욱 더 제도적 발전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들을 가지고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음
- 이러한 의견들 중에서는 이번 토론회의 논의 주제 중 하나인 동물 도살 행위를 원칙적으로 동물학대 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자는 의견을 포함하여 동물학대 행위의 명확화, 동물학대에 대한 벌칙 상향, 벌칙 실효성 제고를 위한 양형 기준 마련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아울러, 어떤 행위가 동물학대인지, 동물학대를 받으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대폭 강화되어 할 필요성도 인식하고 있음
- 동물학대 행위 확대 및 명확화라는 정책 방향에서 볼 때 법률 상 허용되지 않는 동물 도살 행위를 원칙적으로 동물학대 행위로 규정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그 필요성을 공감하나, 타 법률과의 상충 가능성 등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축산물위생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법률에서 동물의 도살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동물을 죽인다면 그 행위가 과연 어떠한 이유로 정당화될 수 있을지 의문임
 - 다만, 예외적 사유 추가 필요성, 「동물보호법」 개정안과 타 법률과의 상충 가능성 등을 짚어 봐야 함
 - 예를 들어, 인수공통전염병의 예방을 위해서 질병 매개체가 될 수 있는 동물을 죽이는 경우나 재난 또는 기근 등 위기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서는 동물을 죽여서 먹을 수 밖에 경우 등은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음
 - 또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모든 음식물(‘식품’)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서 해당 원료를 얻기 위한 동물을 도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이 경우에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경우 자연사한 동물의 사체를 원료로 이용하거나, 해당 원료를 수입으로 해결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또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동물학대의 범위를 과도하게 확대 혹은 축소하는 측면이 없는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은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동물학대로 규정하여 학대 범위가 확대되는 측면이 있는 반면, 동물을 “죽여서는 안 된다”고 표현하고 있어 이것이 고의성을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 동물학대의 범위를 축소하는 측면*이 동시에 존재하게 됨
- * 동물을 죽이는 행위뿐만 아니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고의성이 없는 행위)도 동물학대의 포함('17.3.21 「동물보호법」 개정, '18.3.22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약처에 보낸 카라 공문 수록

KaRa

(사) 동물권행동카라



동물권행동 카라

발신일 2018년 7월 5일

수신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참조 식품안전정책국 담당자, 식품소비안전국 담당자

제 목 개고기 유통과 축산폐기물 관리에 대한 답변 요청의 건

1. 귀처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사)동물권행동 카라는 2002년 설립되어 생명존중의식 재고를 위한 캠페인, 올바른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연구와 제안, 다양한 개식용 반대 캠페인, 길고양이와 공존하기 위한 캠페인, 실험동물 반대, 농장동물의 복지 증진, 오락동물의 반대, 기타 채식문화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동물권 단체입니다.
3. 현행법상 ‘개’는 축산법에서 정하는 ‘가축’에 해당하나 1978년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개가 빠진 이래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가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법의 맹점을 이용한 개농장 운영, 개고기 유통이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환경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4.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정하고 시중에 유통되는 식품을 관리·감독하는 것은 식약처의 소관입니다. 이에 따라 카라는 아래 두 가지 질의에 대한 식약처의 공식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아래 두 가지 질의 사항에 대해 법에 근거한 명확한 부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5. 두 질의에 대한 답변을 7월 10일까지 요청합니다.
이메일 info@ekara.org 팩스 02-3482-8835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6. 문의사항은 담당 권혜라 활동가 070-4760-7287 혹은 김현지 정책팀장 070-4760-1213 으로 연락바랍니다.
7. 감사합니다.

아 래

질의 1)

- 식품위생법 제 7조에 따른 식품공전에는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를 정하고 있으며, 여기에 수재된 어류 외 동물은 오소리, 타조, 뉴트리아, 캥거루입니다. 즉 ‘개’는 수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현재 식품공전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규정을 위반한 채 아무런 기준 없이 개고기가 유통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소관 부처로서 식약처의 입장 및 이후 ‘개’가 축산법의 가족에서 제외될 경우 식약처의 개고기 유통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

- 식품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축산물의)검사불합격품의 용도 전환의 방법과 기준 중에는

“2. 용도전환의 방법 등
 가. 농장·동물원 등에서 동물의 사료로 직접 사용한다.”
 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 조류독감과 구제역의 빈번한 발생과 식품 안전을 위해 축산물위생관리 및 축산물유통의 최종 단계인 축산폐기물의 철저한 폐기 관리가 절실한 시점에서 위 조항은 개농장으로의 축산폐기물 유입을 지원하며 결국 축산물위생관리 체계를 총체적으로 와해하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축산폐기물을 개농장에서 반출하여 임의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식약처의 입장 및 최소 19년 전 제정된(2000년 12월 11일, 혹은 그 이전 제정) 이후 여전히 독소조항으로 존재하는 위 조항의 폐지에 대한 의견과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 동물권행동 카라



담당 권혜라 활동가 팀장 김현지 정책팀장 이사 대표 임순례
 시행 카라-1807-가A-02 (2018. 7. 5.)

우 039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 122(서교동 457-5) / <https://ekara.org>
 전화 02)3482-0999 전송 02)3482-8835 / info@ekara.org / 공개

KaRa

(사) 동물권행동카라

토론

한준욱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과장

KaRa
(사) 동물권행동카라

KaRa

(사) 동물권행동카라

개식용 문제에 대한 법의 흠결과 보완책

법무법인 자연 변호사 최 재 흥

1. 개식용 문제로 인한 사회적 분쟁

개식용에 대한 사회적 분쟁은 우리의 전통적 음식문화이자, 개인의 취향이고, 다른 동물에 대한 육식 섭취와 동일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과 인간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반려동물로서 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된 시점에서 개식용은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의 대립이다.

반려견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2018년 6월 25일 CBS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성인 1만126명을 대상으로 개고기 식용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결과는 개식용 금지법을 반대한다는 응답이 51.5%로 찬성한다는 응답 39.7%보다 높게 나와서, 아직까지 개식용에 대한 찬성입장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개식용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도 비윤리적이고, 잔인한 방식으로 도살하거나, 법제도의 밖에서 개에 대한 도살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현실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견해가 많다.

2. 개식용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접근방식

개식용 문제가 우리사회 전면에 등장한 것은 88서울올림픽을 기점으로 한다. 당시 외국에서 우리의 개식용 문화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정부는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사회적으로는 문화사대주의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있었다.

또한, 개식용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이를 공식화하지 않으려는 정부의 태도에 따라 개식용을 위한 도살, 유통과 사육과정에 대한 제도들이 제대로 규율되지 않고 있다.

가. 가축으로서 ‘개’

1973. 12. 24. 개정된 축산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 제5호가 축산법 제2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가축의 범위에 ‘개’를 처음으로 포함한 이후, 현재까지 ‘개’는 축산법에 의한 가축의 대상에는 포함되어 있다.

나. 축산물로서 ‘개’

‘개’를 축산물로 취급하였다는 최초의 법령은 1975. 8. 30. 개정된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2조이다. 동 규정은 “제2조(수축의범위)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동물은 개 및 사양하는 사슴과 비둘기로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1978. 6. 13. 개정된 시행규칙에서는 수축의범위 규정을 삭제하여 ‘개’를 축산물에서 제외하였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현행법체계상 ‘개’는 식용대상으로서 축산물에는 해당될 수 없고, 도축이나 유통이 금지되어 있다.

다. 동물보호법의 보호대상으로서 ‘개’

‘개’는 동물보호법상 동물에 해당하여 개를 집단적으로 사육하는 자는 그 목적을 불문하고 동법의 적용대상이 되며, 동법에 따라 동물학대가 금지되어 있다.

라. 가축분뇨의 관리대상으로서 ‘개 사육시설’

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상에서는 개사육시설을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으나, 2006. 9. 27. 제정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적용대상이 되는 사육동물 중에 ‘개’를 포함하여 개사육시설에서 배출되는 분뇨도 동법의 적용대상이 되었다.

마. 소 결

개식용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던 상황에서 정부는 ‘개’를 축산법상의 가축으로는 취급하여 왔으나, 개식용에 대한 문제를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하여 개사육시설에서 배출되는 분뇨등에 대한 규제도 2006.에서야 이루어졌다.

한편, 실제 개식용을 위한 ‘개’의 도축, 유통 과정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이를 전혀 규율하지 않고 있어 제도적인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로 방치된 상태이다.

따라서, 현행 법체계상 ‘개’는 동물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동물이며, 축산법상의 가축에 해당되기에, 개 식용을 위한 도살은 인정되지 않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에 법과 현실의 괴리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가축에 ‘개’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개’에 대한 도살은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동법은 축산물을 생성하기 위한 도축과 유통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제반 문제를 규율하는 법률로서, 동법상 가축만이 도축과 유통이 가능하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도축과 유통 자체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다고 해석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동법에 ‘개’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개’의 도축과 유통과정에서 위생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의 도축은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금지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결 론

개식용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뜨거운 상황에서 정부는 이 문제를 회피할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규율하고 제도적인 틀 안에서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실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개 도살이 불법일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개식용에 대한 찬성여론이 높다는 점, 개의 도살과 유통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국민의 건강상 잠재된 문제, 개식용에 대한 반감여론도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실과 법의 괴리를 조속히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KaRa

(사) 동물권행동카라

개농장의 동물복지를 역으로 추적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

잘키움행동치료동물병원 & 동물복지행동연구센터

이혜원 수의학 박사(동물복지/동물행동분야)

동물복지학은 삶의 질을 연구하고 논하는 학문입니다.

동물복지학자로서 개농장에서 살고 있는 개들의 상태를 조사하고 연구하고 싶었으나 농장주들은 개들에게 접근하는 것을 대부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농장주변에서 발견된 비어있는 여러 가지의 항생제, 지사제 등의 약병들은 농장에서 살고 있는 개들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의심을 품게 하였습니다.

축산법에 포함되어 있으나 축산물위생관리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개이기 때문에 도축 및 유통과정이 관리 감독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항생제 잔류 검사는 이뤄지고 있지 않으며 약물남용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하여 재래시장에서 구입이 가능한 개고기를 직접 조사하여 실제 약물이 농장의 개들에게 사용되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많이 사용되어지는 항생제 9가지를 선정하여 총 93개의 개고기에 실험을 하였습니다. 9가지의 항생제 중 8가지의 항생제 성분이 검출되었으며 93개의 개고기 중 최소 한 개 이상의 항생제 성분이 검출된 개고기의 수는 60개였습니다. 이 중 2개 이상의 항생제 성분이 검출된 개고기의 수는 총 29개였으며, 더 나아가 이 중 3개의 항생제 성분이 검출된 개고기는 총 5개, 5개의 항생제 성분이 검출된 개고기가 1개였습니다.

여러 항생제를 사용한다는 것은 농장에서 사는 개들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소, 돼지, 닭의 기준인 항생제잔류허용치를 초과하지 않았더라도 소량의 항생제가 잔류한 고기를 먹었을 때 일부 사람들에게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따라서 항생제 성분이 잔류된 개고기를 섭취하고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 사람들이 있지 않은지 역학조사 해 보아야 합니다.

이제 여러 항생제가 사용될 수밖에 없는 사육시설의 문제점을 논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니다. 사육시설의 문제뿐만 아니라 개들에게 적절한 영양을 제공하고 있는지, 면역저하를 일으키는 스트레스 상황들과 열악한 위생상태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보아야 합니다.

개들의 기본적인 습성이 충족되어질 수 없는 현 개농장의 현황을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K a R a

(사) 동물권행동카라

토론문

부경대 법학과 교수 박종원

1.

이번에 발의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원칙적인 금지행위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인도적인 이용이라는 한도 내에서는 인간의 동물 이용을 용인하는 경향을 띠는 “동물복지론(Animal Welfare)”의 입장에서 인간의 동물에 대한 사용을 본질적으로 부정하는 “동물권리론(Animal Rights)”의 입장으로 조금 더 다가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 구체적 내용을 뜯어보면,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에 따라 도살하는 경우 등을 예외로 인정하고 있어서 인간의 동물 이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법률 규정에서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원칙적인 금지행위로 선언하였다는 것 자체가 동물권리론에 한 발짝 다가선 것이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인간중심주의적 시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생태계중심주의로 이행하여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그리고 동물복지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동물의 생명을 함부로 해치는 행위가 허용되어서는 안 되며, 동물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가 존중되고 배려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법률이라는 것이 사회 구성원 다수의 공통된 합의에 기초하여 정립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원칙적인 금지행위로 규정하는 것이 우리 국민 다수의 시각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육식을 즐기고 있는 상황에서, 2016년 기준으로 약 310만 마리의 소, 약 1,000만 마리의 돼지, 약 1억 7,000만 마리의 닭 등이 고기 등의 제공을 목적으로 사육되고 있는 현실에서, 더구나 작년 한 해 1만7천 건의 로드킬 사고, 전염병 확산 방지 등을 위한 목적의 살처분이나 생태계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외래종 퇴치의 필요성 등을 보태어 고려할 때,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형벌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사회 구성원 다수의 공통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얼마 전 살충제 계란 파동을 계기로, 우리 국민들은 열악한 사육환경에서 길러진 동물이 결코 우리 인간에게 이로운 것을 줄 수 없음을 깨달았다. 비좁은 사육환경

에서 항생제와 살충제, 성장호르몬을 맞으면서 살찌워지고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이한 동물이 제공하는 고기 등이 결국에는 우리 인간의 건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동물을 이용하기는 하되 동물이 태어나서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불필요한 고통을 겪지 않고 타고난 습성을 표현할 수 있도록 존중하고 배려하여야 할 필요성은 생태계중심주의나 동물권리론의 입장이 아니더라도, 인간중심주의적 시각에서도 그리고 동물복지론의 입장에서 충분히 수용 가능하지만, 법률에서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원칙적인 금지행위로 규정짓는 것에 대해서까지도 과연 그러할지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오늘 세미나의 주된 논점은 개 식용 문제로 모아져 있다. 법학자의 시각에서, 현행과 같이 개 식용의 문제를 법의 테두리 밖에 두는 것은 확실히 잘못된 것이다. 개가 「축산법」상으로는 가축에 해당하면서도 「축산물 위생관리법」상으로는 가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정합적이지 못하다.

개는 「축산법」상 가축이다. 「축산법」의 궁극적인 입법목적이 축산업 발전, 축산농가의 소득 증대, 축산물의 안정적 공급 등에 있음에 비추어 본다면, 「축산법」상 가축은 인간에게 축산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육되는 동물로 이해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축산물은 가축에서 생산된 고기, 젓 등과 그 가공품·원피·원모, 뼈 등 가축의 부산물을 말한다. 개라는 가축에게 있어서 고기 외에 무엇이 축산물에 해당할 수 있다는 말인가? 개털? 오죽하면 국어사전에 개털이 “쓸데없는 일이나 행동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등재되어 있겠나? 「축산법」이 가축으로 개를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은 개고기를 축산물로 인식하고 있음과 다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가축에는 개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물론 이들 두 법률이 가축의 범위를 서로 다르게 정의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예컨대, 벌의 경우 직접적으로 그 고기를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부산물을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육되는 것이기 때문에, 「축산법」상으로는 가축에 해당하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상으로는 가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개는 이러한 예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금의 법현실을 평가하자면, 「가축법」은 개고기 생산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는 행위를 허용하면서도 「축산물 위생관리법」은 개를 가축으로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개고기의 위생적인 관리, 그로 인한 공중위생 문제에 침묵하고 있는 꼴이다. 법률간의 부정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바로잡기 위한 입법적 해결책은 둘 중 하나이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가축에도 개를 포함시키고 그 사육과정에서의 동물복지를 보장하고 국민건강상의 위협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거나, 혹은 이번에 발의된 「축산법」 개정안에서와 같이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는 것이다.

개 식용 문제에 대한 시각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자는 택하여야 한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고 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벌할 것인가, 혹은 제한적인 식용을 허용하되 사육·관리·운송·도살 등 각 단계에서 동물복지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동물복지를 위해서라도, 인간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환경을 위해서라도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개 식용의 문제를 법의 테두리 밖으로 몰아내는 것은 입법자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입법적 결단이 필요하다. 물론 투명하고 객관적인 공론화 과정도 거쳐야 할 것이다.

3.

입법전략적으로는 이번 「동물보호법」과 「축산법」 개정안과 같이 개 식용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방식 외에, 보다 손쉬운 한 가지 해결책이 눈에 들어온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방식은 마치 동물을 죽이는 행위가 일반적으로는 허용된다는 전제하에, 금지되는 동물살해행위의 유형을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이른바 black-list 내지는 negative 방식을 채용한 것처럼 보인다.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원칙적인 금지행위로 명시한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 역시 현행법을 이와 같이 이해하고 있음에서 비롯된 것이며, 현행법과 달리 white-list 내지 positive 방식, 즉 허용되는 동물살해행위만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취지로 이해된다. 이러한 입법방식의 전환은 앞서 평가한 바와 같이 동물복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동물생명존중사상에 기초한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개 식용의 근절을 꾀하기 위한 것으로 읽힌다.

그런데, 사실 현행 「동물보호법」을 뜯어보면, 전면적으로 black-list 방식을 채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현행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4호는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 조항을 문리적으로 해석한다면, 동 법률 조항이 시행규칙으로 위임하고 있는 것은 “금지되는 동물살해행위의 유형”이 아니라 예외적으로 동물살해행위가 허용되는 “정당한 사유”의 구체화 내지 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동 조항에서 예시하고 있는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역시 동물을 죽이는 것이 허용되는 “정당한 사유”에 대한 예시로 볼 수 있는 것임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하다.

이렇게 본다면,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은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동물살해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설령 그러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제1호 내지 제3호와 같이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거나, 공개된 장소 혹은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거나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죽이는 행위는 여전히

금지됨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기본적으로는 법에서 정한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동물살해행위를 금지하는 white-list 방식을 취하면서도, 예외적인 정당화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여전히 허용될 수 없는 살해행위의 방법을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black-list 방식을 조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히려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넘어선 규정으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해석에 기초하여, 시행규칙을 개정함으로써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 내지 한정하는 입법방식을 취하는 것만으로도,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과 같은 입법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입법적 저항 또한 비교적 덜할 것이다.

예컨대, 수의학적 처치로서 불가피한 경우,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가축을 도살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가축을 살처분하는 경우,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을 제거 또는 방제하는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생동물을 살처분하는 경우 등을 “정당한 사유”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개 식용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오히려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을 통해 가축에 개를 명시적으로 포함시키지 못하는 한, 결국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및 도살이 금지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게 될 것이다. 한편, “재산상의 피해 방지를 위한 경우”를 일괄하여 예외적 허용행위로 규정하는 것은 동물의 생명 존중이나 동물복지의 관점에 역행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아니하며, “중대한” 재산상의 피해의 방지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하되 중대성에 대한 해석은 법원에 맡기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4.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들 하지만, 이를 이유로 다른 생명을 함부로 다루는 행위가 합리화될 수는 없다. 동물이라도 그 생명은 존중되어야 하며, 소중히 여겨져야 마땅하다. 동물의 권리를 논하지 않더라도, 동물과의 관계를 피하고자서는 성립 자체가 불가능한 우리 사회를 보다 건전한 사회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라도 같은 공간에서 살아가는 동물을 단지 ‘물건’으로만 취급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번 「동물보호법」과 「축산법」 개정안 발의를 계기로,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동물복지는 물론 동물생명존중에 대한 인식이 한층 높아지기를, 그리고 그에 따라 인간과 동물을 둘러싼 산적된 법적 과제들이 하나둘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제는 개식용 종식으로

동물보호단체 행강 대표 박 운 선

350마리 유기견보호소를 15년째 운영하며, 외부로는 동물보호·복지를 실현하는데 작으나마 힘이 되고자 동분서주하며 다른 동물보호 단체들과 연계하여 활동하는 동물보호단체 행강입니다.

시민집회를 하게 된 동기와 목표

많은 수 십 마리씩 이곳저곳의 시보호소에 입소되어 안락사 위기에 처한 아이들, 질병에 방치되어 구조를 필요로 한 채 생명이 꺼져가는 가여운 아이들, 번식장에서 최후에는 폐건으로 팔려가는 아이들, 개장수에게 팔려가 도살장으로 갈 뻔한 아이들, 위탁시설에 맡겨졌다 어느날 소리없이 사라진 보호자로부터 버림 받은 아이들 등 저희가 돌보는 아이들에겐 슬한 사연이 있습니다.

모두 저마다 안타까운 사연 하나씩 갖고 있는 가여운 개들을 보며 우리나라의 부족한 동물보호법과 그 현실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저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기에 24개의 풀뿌리 동물보호단체들이 오프라인에서 모이게 되었고 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의기투합, 동물유관단체협의회(이하 동단협)를 만들었습니다.

동단협의 선임간사와 대표를 역임하면서, 동단협의 여러단체들(탱커벨PJ, 다숨, 나비야사랑해, 고유거, 동학방 등 24개단체)과 함께 많은 국회의원들을 만났습니다. 수많은 면담과 간담회, 토론회 자리 등을 통해서 동물보호법 개정을 논의했고 2016년 한정에 의원님을 통하여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리하여 2016년 7월부터는 여론을 모으고자 여의도 국회 앞에서 동물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집회를 시작했습니다. 이 집회는 부족한 동물보호법의 개정을 소망하는 모든 시민들과 함께함으로써 정부와 입법기관인 국회에 의견을 모아서 전달하는 창구 역할도 겸하고자 했으며, 우리의 염원을 담은 촛불을 하나, 들썩 켜면서, 마침내 커다란 횃불이 될 때까지 여론을 모아보려 했습니다.

현장의 뜨거운 염원이야말로 국회의원들이 동물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제안의 동력

이 됨을 믿어 의심치 않았으며, 마침내 법안 발의가 이뤄지게 되었습니다. 같은 해 강아지 공장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었고, 어지러운 국회 정세와 맞물려 반려동물 산업육성책이 발표되는 등 실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는 여세를 몰아 우리의 몇 가지 법 개정 제안 가운데 개·고양이 반려동물 번식장 허가제를 통과 시켰습니다.

또한, 작은소참진드기 관련하여 마치 길고양이 때문에 위험한 것처럼 호도한 MBC 방송을 규탄하는 시민집회를 상암동 MBC사옥 앞에서 가졌습니다. 국회 동물복지포럼의 의원들에게 길고양이에 대한 부당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를 요구하였고, 101명의 동물보호가 및 캣맘들의 청원형식의 글을 책으로 만들어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이 국회에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16년 11월 상암에서 600명, 2017년 4월에는 인사동에서 500여명 대규모 전국시민집회를 가졌고, 같은 해인 2017년 7월에는 메이저 단체들과 연대하여 서울 시청앞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여러 국회의원들과 내빈을 모시고 참여자 전원 거리행진을 하면서 문화제 형식으로 성대히 치룬 바 있습니다.

그때 참여해주셨던 의원님들은 기억하실겁니다. 지금도 그 날 전국 각지에서 모인 동물을 아끼는 시민들과 활동가들의 우렁찬 함성이 아직도 제 귓가에 생생하고 가슴뭉클하게 남아있습니다.

시민집회의 성과와 활동계획

동물단체들과 함께하는 시민집회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매주 시민집회를 열면서 현장에서 만나는 시민활동가들과 반러시민들의 모습은 흡사 투쟁하는 전쟁터의 용사들 같았습니다. 너무도 적극적이었고, 동물사랑은 늘 변함없이 꾸준한 집회 참여로 나타났습니다. 때로는 정열적으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매우 가슴 아픈 저마다의 사연을 가지며 개, 고양이 도살과 식용으로 인한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초기의 시민집회가 한 자리에서 서로의 트라우마나 사연들을 공유하며 조용하게 외치는 모습이었던다면, 지금의 시민집회는 좀더 발전하여 개농장, 개시장과 도살장 등지로 그 활동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폭력과 불법의 최정점인 현장으로, 도살의 피해자인 개와 고양이들이 있는 곳으로 말입니다.

좁은 철장에 수십 마리씩 온몸이 구겨 넣어진 채 물 한 모금 못 먹으며 극심한 추위와 혹서에 방치되다가 극도의 공포와 고통속에서 처절히 죽임당하는 아이들을 도살금지법과 식용금지법으로 지키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비가오나 눈이오나 시민집회는 매주 꾸준히 열렸으며 활발히 거리 서명을 받는 등 저희

활동은 단체가 추진하는 활동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시민집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적극적이었으며, 모란시장에서도, 경동시장에서도, 구포시장, 칠성시장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멈춤없이 꾸준히 이뤄져왔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시민활동은 최근 현행 동물보호법의 부족함을 알리고, 동물보호법을 개정하는 데 있어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시민집회는 일반시민들의 확대, 유기, 도살에 대한 고발과 민원 등이 조직되어 사건을 알리고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불법 단속에 대한 활동들이 국민의식 개선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개, 고양이의 도살과 식용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전파하고 나아가 유기동물을 입양시키고 동물보호·복지 정책의 실현도 앞당기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느 누구에나 어디에서든 개도살 금지와 개식용 종식을 당당히 언급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되었음을 확신합니다. 이는 시민집회의 성과이기도 합니다. 지난 4월 개식용 종식을 위한 순수한 시민연대체는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동단협이 꾸준히 매주 가져오던 집회를 이어받았고, 4월 29일 첫 집회에는 전국에서 150여명의 시민들이 모였으며, 드디어 5월에는 전국민 대집회를 기획, 350명 이상의 높은 참여로 집회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초복을 앞둔 7월 15일, 또한번의 전국민 대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돈의원법, 표창원의원법 발의에 대하여

지난 4월에 결성된 개·고양이 식용 종식을 위한 시민연대의 시민들과 개·고양이 식용금지법 제정을 위해 오프라인 집회를 통해 정부와 국회, 사회 전반에 걸쳐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우리 모두가 고대하고 염원하던 이상돈 의원의 축산법상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는 법안이 발의되었고, 곧이어 표창원 의원의 동물의 임의도살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그토록 염원하던 개, 고양이 식용금지와 직결되는 두 법안의 발의가 너무도 기쁘고 감회 깊습니다.

이 두 법안과 함께 한정애 의원의 음식물류폐기물에 대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지난해 발의되어, 이 세 법안이 나란히 있음은 1500만의 반려인과 동물보호 단체들의 염원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활동가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를 청원하였고,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함을 절절히 소원, 청원 성공을 이루기 위해 불철주야 온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시민들과 연대체를 만들고 이끌어가는 활동가로서 동물단체들의 활동에 협조하는 것은 물론, 일반시민의 위치에서 전국의 각종 거리와 잔혹한 개시장

앞에서 집회를 갖고, 평범한 시민들과 함께 집회 현장에서 펼쳤습니다. 그러면서 세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사회 전반에 걸쳐 여론을 조성하겠습니다.

동물복지의 최우선 선결과제인 개식용 종식. 우리 사랑스럽고 소중한 생명인 개, 고양이의 도살·식용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들은 개,고양이 식용종식이 실현되는 그날까지 그 일련의 활동을 잠시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K a R a

(사) 동물권행동카라

질 의 응 답

KaRa

(사) 동물권행동카라

KaRa

(사) 동물권행동카라

동물권행동 카라

KARA(Korea Animal Rights Advocates)의 뿌리는 자원봉사자들이 중심이 되어 2002년에 만든 <아름픔>입니다. 아름답은 이 땅에 아직 동물보호운동이 뿌리 내리지 못했던 시절에 사회 전반의 낙후된 생명의를 전환하기 위해 다양한 캠페인에 주력해왔으며, 2006년에 비영리시민단체 'KARA'로 등록되었고, 2010년에는 사단법인으로 정식 등재를 거치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KARA는 지난 16년간 사설 동물보호소 지원, 유기동물 입양, 개식용·모피·동물실험 등과 관련한 동물학대방지 캠페인, 채식 캠페인, 동물보호법 개정 운동, 동물보호 무크지 <숨> 발간, 동물사랑교과서 <동물, 아는 만큼 보인다> 발간과 각종 문화·교육활동 등을 전개해 왔으며, 농장동물 복지와 야생동물 보호까지 활동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KARA는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동물권을연구하는변호사단체 PNR

PNR은 "People for Non-human Rights"의 약자로, 2017년 7월, 현직 변호사들이 동물의 법적 지위와 권리 증진을 이끌기 위해 최초로 설립한 임의단체입니다. 2018년 6월 현재 10명의 변호사 및 1명의 고문(서울대학교 수의대학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PNR의 목표는 비인간 동물이 생명으로서 그 가치와 존엄성, 근본적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①국내외 법제를 조사·연구하고 ②관련 법령 개정과 정책 시행을 제안하고 지원하며 ③ 동물권 소송 등 동물을 대변하는 법적 활동을 지속해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KaRa

(사) 동물권행동카라

본 내용은 무단 복제와 전재,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KaRa

(사) 동물권행동카라